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보 도 자 료**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2017년 3월 9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3.8(수)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7. 3. 8(수)	담당부서	불공정무역조사과
담당과장	정병락 과장(044-203-5880)	담 당 자	정종윤 사무관(044-203-5881)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강화

- 업종별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16개)와 간담회 개최 -
- 중소기업에 대해 대리인 선임비용 5천만원까지 지원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신희택)는 '17. 3. 8. (수)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신고센터 운영 및 조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 무역위원회는 그 동안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과 원산지표시위반 물품의 수출입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수출입·판매 금지, 폐기처분 등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해 기업의 피해를 구제해왔다. (첨부 1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개요)

* 불공정무역해위 조사신청(건수) : ('14년) 10 → ('15년) 9 → ('16년) 12

○ 또한, 산업현장에서의 효율적인 불공정무역행위 감시·적발을 위해 빈발 업종 중심으로 업종별 대표성이 있는 협회·단체 16개를 신고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첨부 2 : 신고센터 개요 및 현황)

○ 특히, 올해는 ①신고센터별 당해 업종 물품의 수출입 감시 및 현장조사 강화, ②생활용품, 화장품 등 불공정무역행위 빈발분야를 중심으로 신고센터 추가지정, ③신고센터 및 국내기업 담당자 대상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맞춤형 교육 실시, ④주요 업종별 간담회, 제도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조사하기로 했다.

□ 불공정무역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누구든지 무역위원회나 해당업종의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조사를 요청하면 된다.

○ 무역위원회는 신고센터와 합동조사 등을 통해 관련정보와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2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에 대해 판정한다.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한다.

○ 한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하는 업체가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변호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02-2124-3165)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활용 사례 >

<사례 1> 의류제품 상표권자인 A씨와 B씨는 한국의류산업협회(신고센터)의 제보를 통해 C사가 자신들의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가 있는 레깅스를 수입하여 판매한 사실을 인지하고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였으며, 무역위원회는 C사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해당물품의 수입·판매 중지를 결정함

<사례 2> D사는 E사와 F사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윤활성첨가제를 수입·판매한 혐의로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였으며, 무역위원회는 E사와 F사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과징금 1억5천만원과 54만원을 각각 부과함

□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무역위원회 조영태 무역조사실장은 "최근, 지식재산권 침해 및 원산지 표시위반 물품의 유입이 확대되고, 침해유형이 지능화·복잡화함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보다 강화해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신고센터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 라고 당부"하였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과 정종윤 사무관(☎ 044-203-588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7-03-08 15:17:10

첨부 1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개요

1. 개념 및 유형

□ 개념

○ 불공정무역행위는 수출입거래에 있어서 경쟁원리와 거래질서를 침해하여 경쟁 상대방 또는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무역행위

○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는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하고 무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

□ **불공정무역행위의 유형**(불공정무역조사법 제4조제1항)

지식재산권 침 해	○ 대한민국 법령·조약에 의해 보호되는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프로그램저작권,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지리적 표시,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물품 등을 - 해외에서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 - 수입하거나, 수입 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 - 수출하거나, 수출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
원산지표시 위 반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물품 등, ○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물품 등, ○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을 -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품질거짓·과장 표시	○ 품질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물품 등을 -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수출입 질서저해	○ 수출입계약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물품등의 수출입·분쟁발생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외 신용을 손상시켜 해당 지역에 대한 수출입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조사절차

조사신청 (신청인 ⇨ 무역조사실)
· 누구든지, 서면신청(조사신청서+증빙자료)
·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

직권조사
· 불공정무역행위혐의가 있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무역조사실 / 위원회보고)
① 신청기간, 신청서류 구비요건 검토, 보완
② 조사신청 후 20일내 결정

잠정조치
① 신청인의 잠정조치 신청(담보제공)
② 무역위원회가 시행여부 결정
③ 피신청인에게 잠정조치 명령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무역조사실)
· 서면조사 원칙, 면접 또는 현지조사 가능
· 외부전문가 감정, 기술설명회 등
· 사유발생시 조사 중지 및 종결
· 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한 조사·판정

피신청인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 제재조치(안)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의견제출 기회 부여(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산업부 장관 의견청취
· 시정조치(안)에 대해 산업부장관(소관과) 의견조회

최종판정 (무역위원회)
① 조사개시 후 6월내 판정(2월씩 2회 연장 가능)
·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 제재조치 수단 및 수준 결정
② 지재권 침해 기판정물품 확인

제재조치 시행 (무역위원회 ⇨ 피신청인)
· 시정조치 명령(시정조치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 과징금 부과

이의신청 ((피)신청인 ⇨ 무역위원회)
·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내

이의신청 심의결정 (무역위원회)
· 신청일로부터 60일내 결정(30일 연장 가능)

try of Trade,
try and Energy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7-03-08 15:17:10

첨부 2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개요 및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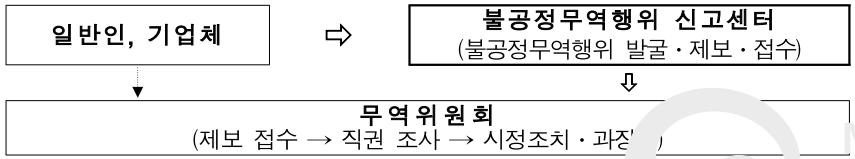
□ 신고센터 개요

○ (목적) 산업 현장에서의 불공정무역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적발하기 위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지정·운영 ('07.9월~)

○ (기능) 불공정무역행위 발굴 및 상담, 발굴된 건을 무역위 조사와 연계, 당해 업종 물품의 수출입 감시 및 동향 분석, 홍보활동

- 불공정무역행위 입증에 필요한 자료 수집, 신고센터의 제보로 조사·개시되는 경우 무역위·신고센터 합동조사 실시

< 업무 추진절차 >



□ 신고센터 현황 [16개소]

신고센터명	홈페이지 주소	연락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www.koipa.re.kr	02-2183-5888
한국의류산업협회	www.kaia.or.kr	02-528-0116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www.kowic.or.kr	02-422-6690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www.optical.or.kr	053-355-0995
한국기계산업진흥회	www.koami.or.kr	02-369-7852
대한안경사협회	www.optic.or.kr	02-756-1001
한국산업용재협회	www.kimta.kr	02-2275-4071
한국온라인쇼핑협회	www.kolsa.or.kr	02-784-4114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	www.kotoy.or.kr	02-795-9505
한국판유리산업협회	www.flatglass.or.kr	02-3453-7991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www.koia.or.kr	053-350-7852
한국베어링공업협회	www.kobema.or.kr	02-784-1705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www.kmdia.or.kr	070-7725-8730
한국철강협회	www.kosa.or.kr	02-559-3547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02-6000-5518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www.e-tipa.org	02-3445-3763